



# 2024년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/컨벤션 지원제도 안내문

2024. 03.

MICE협력팀



## 국제회의 지원제도 요약
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행사 요건	<input type="checkbox"/> 근거/요건<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( '22.12.28. 시행)> <b>1. 국제기구, 기관, 법인 또는 단체 (국제기구 가입 불문)</b> <b>2. 3개국 이상</b> <b>3. 총 참가자 100명 이상,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회의</b> <b>4. 회의 일수 2일 이상</b> <b>5. ICCA, UIA 등제 국제회의(유치, 해외홍보만 해당)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조금 산식	<input type="checkbox"/> 보조금 산출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유치 및 홍보</b> : 컨벤션 국제기구(ICCA, UIA)의 등록된 수(최근 3개년 평균의 80%)와 주관단체가 등록된 외국인 수 중 작은 수 적용</li> <li>· <b>개최</b> : 외국인 대상 오프라인 등록 참가자 규모에 따라 지원            ※ 외국인 온라인 수는 별도지원, 최대 200명, 1인당 2만원 / 순수 온라인 회의 지원불가</li> </ul>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문별 참가자 규모에 따른 정액+가점 (지원한도 단위 : 백만원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유치</th> <th colspan="2">홍보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4">지원한도 (가점포함시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소형(50-500)</td> <td>15</td> <td>(21)</td> <td>6</td> <td>(8.4)</td> </tr> <tr> <td>중형(501-1,000)</td> <td>20</td> <td>(28)</td> <td>12</td> <td>(16.8)</td> </tr> <tr> <td>대형(1,001-)</td> <td>30</td> <td>(42)</td> <td>20</td> <td>(28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3">개최</th> </tr> <tr> <th>구분</th> <th>지원한도</th> <th>가점포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소형Ⅰ(50-75)</td> <td>5</td> <td>(8.5)</td> </tr> <tr> <td>소형Ⅱ(76-150)</td> <td>7</td> <td>(11.9)</td> </tr> <tr> <td>소형Ⅲ(151-250)</td> <td>10</td> <td>(17)</td> </tr> <tr> <td>중형Ⅰ(251-375)</td> <td>15</td> <td>(25.5)</td> </tr> <tr> <td>중형Ⅱ(376-500)</td> <td>20</td> <td>(34)</td> </tr> <tr> <td>대형Ⅰ(501-750)</td> <td>30</td> <td>(51)</td> </tr> <tr> <td>대형Ⅱ(751-1,000)</td> <td>40</td> <td>(68)</td> </tr> <tr> <td>대형Ⅲ(1001- )</td> <td>60</td> <td>(102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가점은 0.1점당 10% 가산, 가점 모두 받더라도 최대 가점을 넘길 수 없음.	구분	유치		홍보		지원한도 (가점포함시)				소형(50-500)	15	(21)	6	(8.4)	중형(501-1,000)	20	(28)	12	(16.8)	대형(1,001-)	30	(42)	20	(28)	개최			구분	지원한도	가점포함	소형Ⅰ(50-75)	5	(8.5)	소형Ⅱ(76-150)	7	(11.9)	소형Ⅲ(151-250)	10	(17)	중형Ⅰ(251-375)	15	(25.5)	중형Ⅱ(376-500)	20	(34)	대형Ⅰ(501-750)	30	(51)	대형Ⅱ(751-1,000)	40	(68)	대형Ⅲ(1001- )	60	(102)
구분	유치		홍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원한도 (가점포함시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형(50-500)	15	(21)	6	(8.4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형(501-1,000)	20	(28)	12	(16.8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형(1,001-)	30	(42)	20	(28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지원한도	가점포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형Ⅰ(50-75)	5	(8.5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형Ⅱ(76-150)	7	(11.9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형Ⅲ(151-250)	10	(17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형Ⅰ(251-375)	15	(25.5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형Ⅱ(376-500)	20	(34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형Ⅰ(501-750)	30	(5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형Ⅱ(751-1,000)	40	(68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형Ⅲ(1001- )	60	(102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요 가점내역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유치/해외홍보(최대 0.4)</th> <th>개최(최대 0.7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          ① (0.3점)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외 개최지역            ② (0.1점) 외국인참가자 301명 이상            ③ (0.1점) 개최일수 3일 이상         </td> <td>           ① (0.3점) 수도권 외 개최지역            ② (0.1점) 코리아유니크메뉴 활용            ③ (0.1점) 국제회의용역표준계약서 준수확인서            ④ (0.1점) ISO20121가이드라인 또는 ESG 운영가이드 반영 확인서            ⑤ (0.1점) MICE안전매뉴얼 반영 확인서            ⑥ (0.1점) UIA 또는 ICCA 등록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유치/해외홍보(최대 0.4)	개최(최대 0.7)	① (0.3점)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외 개최지역 ② (0.1점) 외국인참가자 301명 이상 ③ (0.1점) 개최일수 3일 이상	① (0.3점) 수도권 외 개최지역 ② (0.1점) 코리아유니크메뉴 활용 ③ (0.1점) 국제회의용역표준계약서 준수확인서 ④ (0.1점) ISO20121가이드라인 또는 ESG 운영가이드 반영 확인서 ⑤ (0.1점) MICE안전매뉴얼 반영 확인서 ⑥ (0.1점) UIA 또는 ICCA 등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치/해외홍보(최대 0.4)	개최(최대 0.7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(0.3점)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외 개최지역 ② (0.1점) 외국인참가자 301명 이상 ③ (0.1점) 개최일수 3일 이상	① (0.3점) 수도권 외 개최지역 ② (0.1점) 코리아유니크메뉴 활용 ③ (0.1점) 국제회의용역표준계약서 준수확인서 ④ (0.1점) ISO20121가이드라인 또는 ESG 운영가이드 반영 확인서 ⑤ (0.1점) MICE안전매뉴얼 반영 확인서 ⑥ (0.1점) UIA 또는 ICCA 등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유치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치제안서, 유치발표 PT, 홍보물, 기념품 제작비, 대행업체 기획료</li> <li>- 본부단체 VIP 사전 방한답사(3인 이하) 및 숙박비, 온라인 방한답사</li> <li>- 해외현장 유치활동 경비, 본부단체 운영 사이트 광고 등 온라인 홍보 등</li> </ul> </li> <li>■ <b>해외홍보 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외홍보 일반 (* 브랜드 개발, 홍보영상물, 간행물 제작, 홈페이지 제작)</li> <li>- 전자대회/유사대회 연계 (* 홍보부스, Korea Night 및 기념품 제작)</li> </ul> </li> <li>■ <b>개최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디지털기술 활용비용, 회의장 임차료</li> <li>- 공식 오찬, 온오프라인 홍보물 및 제작물, 문화예술공연, 방역물품 구입</li> <li>- 해외연사 초청 항공비</li> </ul> </li> </ul> * 단, UIA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순 국내/정치/설교/종교/스포츠/상업적 성격의 모임 대상 지원금, 온라인 국제회의의 지원 결정 산식은 위와 달리 적용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 2024년도 국제회의 지원제도 안내

(한국관광공사 MICE협력팀)

## 1 신청자격

- ▶ 국내 단체 \* 단 부가처세법 및 소득세법 의거 사업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보유한 단체에 한함
  - 국내 주최·주관단체 (학회, 협회, 조직위원회 등)
  - 국내 주최·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 (PCO 등)
  -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 (PCO, DMC 등)
- ▶ 해외 주최단체 \*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국내 등록 단체가 없는 경우
  - 국내 유관 사업체 (지역CVB, 호텔, 유니크베뉴 등)

## 2 지원대상 회의 (\*보조금 지원 관련)

### <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> 개정안

- 국제기구, 기관,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
  - 가.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
  - 나.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, 그 중 외국인이 50명 이상일 것
  - 다.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

## 3 지원구분 \* 동일 국제회의의 건당 유치/해외홍보/개최 단계별 각 1회씩 지원

- **유치 지원** : 국내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전개 시
- **해외홍보 지원** : 국내 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의 전차대회에서 홍보 활동 전개 등 해외홍보 시
  - \* 그 외 기타 유사분야 회의 내 홍보 활동은 별도 심사·검토를 거쳐 지원가부 결정
- **개최 지원** : 국내에서 국제회의의 개최 시

## 4 접수일정

□ 유치·해외홍보: 정기+수시접수 / 개최지원: 정기접수(상·하반기)

- \* 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운영 중단
- \* 24년 국제회의 지원제도 상반기 공고 기간 전이나 중 개최된 국제회의는 신청 단체에 한해 승인 전 사용비용도 소급 지원 가능

## 5 지원사항

### 가. 보조금 지원

\* 주최/주관단체 **先 집행**,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확인 **後 보조금 지급**

구분	보조금 지원 (가능/불가능) 항목
유치	지원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유치제안서, 유치발표용 PT, 홍보물(인쇄물/배너/영상물),대행업체 기획료, 기념품 제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념품은 2종류 제작비만 지원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□ 본부단체 VIP 사전답사(3인 이하): 왕복 항공료, 체제기간 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항공은 Business Class까지, 숙박은 Standard까지 가능</li> <li>* 외국인 2천명 이상 대형 회의 유치시 사전답사 6인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□ 온라인 방한답사 콘텐츠 제작, 온라인 유치활동 경비(홍보 콘텐츠 제작, 광고비)</li> <li>□ 해외현장 유치활동 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조직위 또는 유치추진 학회/협회 소속 회원 2인의 항공료 및 숙박비</li> <li>: 유치 홍보부스 운영 - 부스 임차료, 집기임대, 부스 장식비(엑스배너 등)</li> <li>: Korea Night 등 공식연회 개최비 - 장소 임차료, 식음료비, 공연비</li> <li>* 유치가 결정되거나 유치PT가 이뤄지는 회의 참가시만 지원</li> <li>* 항공은 Business Class까지, 숙박은 1인 1실 Double Room 일반객실 기준</li> <li>* 유치와 관련 없는 국가(도시)를 경유하는 경우 해당구간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(단, 단순 경유일 경우는 제외)</li> </ul> </li> </ul>
	지원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외현장 유치 활동 직원 출장여비, 현지 교통비, 회의 등록비 등</li> <li>* 호텔 숙박비에 조식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 불가</li> <li>· 방한실사시 식비, 차량렌탈비, 투어경비, 일비 등</li> <li>· 물품 발송비, 소모품 등 물품 구입비 등 운영비</li> <li>· 공식 연회 개최(Korea Night)와 관련 없는 식음료비</li> </ul>
해외홍보	지원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일반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기본 BI, 캐릭터, 슬로건, 캐치프레이즈 개발</li> <li>□ 홍보물(인쇄물/배너/영상물/외국어 홈페이지) 또는 온오프라인 광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개최지원의 '미팅테크놀로지'에 홈페이지 제작 항목 신청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[행사참가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홍보부스 임차료 및 설치비, Korea Night 등 공식연회 및 공연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개최 직전 전차대회 및 유사회의 중 1회에 한해 참가 인정</li> </ul> </li> <li>□ 증정용 기념품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념품은 2종류 이하로 제작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	지원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일반] · 전차대회 등과 무관한 기념품(* BI 등과 함께 기념품 시안은 개발 가능하나, 실제 기념품은 홍보할 전차대회/유관대회 행사가 있는/구체화된 경우에만 제작 가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영구 활용 목적의 홈페이지 개발(회의 개최년 이후 서비스가 종료되어야 함)</li> <li>· 국문 제작물, 광고 일체</li> </ul> </li> <li>[행사참가] · 출장여비(일비/식음료비/숙박비/항공료 등 교통비 일체 지원불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물품발송비, 항공 수화물 초과 운반비, 회의 등록비 및 인건비 성격의 비용 등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	보조금 지원 (가능/불가능) 항목
개최	지원 가능	<input type="checkbox"/> 디지털기술 활용비(온라인 플랫폼 구축, 온라인 회의 장비 임차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회의장 임차료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예술공연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식 오·만찬 연회 식음료비, 커피브레이크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역물품, 온오프라인 홍보물 및 제작물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연사 초청: 최대 3인의 항공비(Business Class까지)
	지원 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초청연사 강연비, 활동경비 / 참가자 숙박비, 여비, 교통비 등 인건비 성격의 비용</li> <li>자산 취득 성격의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 및 장비 구매</li> <li>운영비(진행요원 인건비 식비 등)</li> <li>물품 및 기념품 구매비</li> <li>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비(신문, 온라인뉴스, 학술지 광고 등)</li> </ul>

## 나. 보조금 지원절차

<b>주관단체</b> 1. 홈페이지 회원가입 개인가입 후, 단체로 가입	<b>주관단체</b> 2. K-MICE 홈페이지 신청 유치·홍보:수시접수 / 개최:정기접수 (예산소진시까지)	<b>공사</b> 3. 지원기준에 따른 심사 정기접수 심사,결과 발표일 고지	<b>공사</b> 4. 보조금 승인 이메일 통보
<b>주관단체</b> 5. 회의 개최/운영 보조금 한도 내 승인항목별 선지출	<b>주관단체</b> 6. 결과보고 제출 결과보고서, 청구서 및 증빙서 제출	<b>공사</b> 7. 결과보고 검토 증빙서류 적합성 검토	<b>공사</b> 8. 보조금 회계처리 증빙서 제출 후 4주내 입금

## 다. 보조금 결정방식

### 기준인원(참가자 수)의 산출

- **유치·해외홍보** : 컨벤션 국제기구(ICCA\*, UIA)에 수록된 국제회의 정보(통계)의 참가자수(최근 3개년 평균의 80%)와 주관단체가 등록한 외국인 참가자수 중 작은 수 적용

\* ICCA 국제회의 기준 :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참가자 50명 이상의 회의

- **개최** : 외국인 오프라인 참가자수를 기준으로 보조금 결정, 외국인 온라인 참가자가 있을 경우 최대 200명에 한해 1인 2만원 추가 지원 가능

\* 외국인 온라인 참가자 인정회의(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)

- 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컨퍼런스
- ② 네트워킹 활성화(통역, 인터뷰, 투표, Q&A, 메시지 전송, 참가자 출결확인(필수))가 가능한 미팅테크놀로지 적용

## 6 유의사항

- 국제회의 유치/개최/해외홍보 계획서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행사규모를 과대 계상하여 작성할 경우 심사/정산 시 불이익 발생 가능
-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 적절한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, 활동 결과가 계획대비 현저히 부실할 경우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삭감처분
- **보조금 청구 시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)를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해당 단체는 향후 5년간 공사 지원제도 이용 불가**
- 지역관광공사 혹은 지역CVB에 제출한 동일한 증빙(인보이스, 계산서 등)으로 공사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(단, 대형 회의 유치지원 VIP 답사의 경우 신청·제출하는 명단이 다를 경우 예외로 함).

## 7 신청방법

- 공사 [www.visitkorea.or.kr](http://www.visitkorea.or.kr) 및 K-MICE ([www.koreamice.or.kr](http://www.koreamice.or.kr)) 회원가입
- K-MICE 로그인 > 사업지원 > 국제회의 > **보조금 지원안내 및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참고** >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
 ※자세한 사항은 **보조금 신청 및 정산 매뉴얼**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8 문의처

- 한국관광공사 MICE협력팀 (Tel) 033-738-3293(유치)/3246(홍보)/3299(개최)  
 (e-mail) [convention100@knto.or.kr](mailto:convention100@knto.or.kr)